
유럽연합(EU) 정보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정안상의 잊혀질 권리와 현행 우리 법의 규율 체계 및 앞으로의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하정철*

A Thought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rticulated in the European Commission's Proposal fo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Jung Chul Hah*

요 약 최근 유럽연합이 잊혀질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일부에서는 입법화 움직임까지 있다. 현행 법상 정보주체는 제한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내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의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는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린 정보의 경우에만 잊혀질 권리를 한정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올린 것이라면 제3자가 차후에 복사 등을 한 모든 경우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할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민 일반의 참여가 확장되고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설령 그것이 거대 미디어로 인한 정보를 통한 개인통제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리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자칫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잊혀질 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보보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처리, 직접 민주주의

Abstract In the early 2012, European Union proposed new legal framework, includ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he new Proposal articulates kind of sweeping new privacy right and there has been debates on its potential threat to free speech in the digital age. While the situation is similar in Korea, I want to introduce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Proposal. Then, I will analyze current legal system in Korea regarding the new privacy right and suggest some guidelines in searching direction for the coming legislation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not have been promulgated without considering fully its effect on the free speech, especially in the society where the voice toward direct democracy or movement toward participation of the citizen, mainly through cyber space or Social Network Services, has risen much higher in Korea. Especially, the new right seems not to cover the control of data subject on a third party where the third party expressing his opinion by posting himself other's personal data on his blog or others.

Key Words : right to be forgotten, data protection, free speech, the First Amendment, privacy rights, processing of personal data, direct democracy

*백석대학교

논문접수: 2012년 11월 21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12월 17일

1. 서론

2012년 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가상공간에서의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의 일환으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명문화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잊혀질 권리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였을 뿐 아니라, 그 규범 형식도 지침(directive)에서 규정(regulation)으로 바뀌어 법 자체의 규범력 역시 강화되었다. 이러한 입법 움직임은 개인이 적어도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에 관해서는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는 실제 그 적용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유럽연합이 발표한 개정안상의 잊혀질 권리의 범위는 문언대로 적용할 경우 그 범위가 아주 넓어 인터넷 업체들에게도 많은 영업상의 타격을 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 움직임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학계의 논의도 시작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논의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개념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논점이 혼재된 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잊혀질 권리의 범위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직접 게시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과 정보주체가 올린 글을 제3자가 복사한 경우, 그리고 제3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올린 경우를 별로 구분하지 않고 논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앞으로의 보다 깊은 논의를 위하여 EU정보보호법 개정안 상의 잊혀질 권리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규율 범위를 개략적이거나 살펴본다. 이 후에는 우리의 현행 법상의 정보보호 관련 규율체계를 살펴보고, 유럽정보보호법 개정안상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피터 플레이셔의 구분법을 바탕으로 잊혀질 권리 각각의 내용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정리하여,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추후의 법률의 제정 내지 정책의 수립 시 주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잊혀질 권리의 논의 배경

최근 페이스북이나 각종 블로그들이 열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자신이 과거에 올린 사진이나 글들로 인해 뜻

하지 않은 피해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자신이 온라인상에 올린 사진이나 글을 삭제하려 할 때 개인은 해당 사이트에서 그 정보를 삭제하기도 하고, 자신의 활동 이력을 지우고 싶을 때 자신이 개설했던 블로그나 페이스북 계정을 없애거나 회원탈퇴를 한다. 하지만 그 경우 그 정보주체의 바램과는 달리 해당 인터넷 사업자가 그 개인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기 보다는 단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숨기고 있을 뿐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로서 종종 정보주체 자신이 본인의 블로그 등에 올린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의 블로그나 게시판 등에 복사 내지 링크되어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무한정 전파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트위터의 리트윗 등 새로운 방법에 의한 정보의 전파는 그 정도와 파급력에서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개인정보의 특성에 의해 더하여진다. 개인들의 정보에는 단순히 사적 인간관계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상업적 이용가능성이 있는 정보도 있어서 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집·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의해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컴퓨터 악성프로그램은 개인의 인터넷 활동 정보를 취합하여 각 개인의 소비 취향 등을 알고 싶어 하는 기업들에 의해 이용되기도 한다.

이 와중에 2010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비비안 레드당(Viviane Reding)부위원장은 정보주체의 정보가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정보주체의 정보에 대한 지배력 보호는 정보산업의 소비자과 공급자간에 신뢰를 쌓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임을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구글, 야후 등을 비롯한 세계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유럽연합에서의 잊혀질 권리의 입법화 움직임이 자신들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유럽연합에서 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2 EU 정보보호법 개정안상의 잊혀질 권리

우선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를 주된 객체로 하는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확정된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제4조 제2호에서 개인 정보(personal data)는 정보주체(data subject)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주체에 대해서는 동조 제1호에서 특정된 자연인(여기서의 자연인은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법인(法人)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의 자연인이다.) 혹은 정보제공자나 다른 자연인 내지 법인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 같은 정보, 특히 주민등록번호, 주소 혹은 온라인상의 식별번호나 한 개나 수개의 신체적·정신적·유전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 내지 사회적 특성 등에 의해 직접·간접적으로 특정될 자연인이라고 정의한다. 참고로 우리 현행법은 아직 잊혀질 권리를 포괄적으로 입법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개인정보에 대하여서는 두 개 이상의 법률에서 위의 개정안과 매우 유사하게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정보에 대한 다른 권리를 여러 조문에 걸쳐 구체적으로 실시하면서, 제17조에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17조 제1항에서는 정보주체에 관한 일체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는 잊혀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특히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게시한 정보의 경우 잊혀질 권리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보주체 자신이 올린 정보 이외에 타인이 올린 개인정보에도 잊혀질 권리가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술적 조치를 포함해 모든 합리적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접하게 될 제3자에게 정보주체가 링크되거나 복제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명시적으로 열거하면서, 만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3자가 해당 정보를 공표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아울러 제3항에서는 개정안 제80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잊혀질 권리가 제한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80조는 그 표현이 순전히 언론보도의 목적(journalistic purposes)으로 이루어졌거나 예술적 표현으로(artistic or literary expression) 인정될 경우에만 잊혀질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표현의 자유로 인한 예외는 개별 회원국이 그와 관련한 추가 입법을 한 경우에

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잊혀질 권리는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할 때 그 대상도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그 권리의 내적 한계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우선 그 대상과 관련하여 원래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은 레딩 부위원장의 인터뷰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젊은 시절 별 생각없이 가상공간에 올린 자신의 사진이나 의견 등이 평생 남아있음으로 인해 후에 그 개인이 받게 될 불의의 피해로부터 해당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한 입법취지는 개정안 제17조 본문 중의 “정보주체가 어렸을 때(while he or she was a child)”라는 표현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잊혀질 권리는 그에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의 개념 자체가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그 개인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괄하며, 설령 해당 정보를 제3자가 올린 경우에도 정보의 대상인 개인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잊혀질 권리에 기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정보의 진위여부를 가지고 해당 정보의 게시여부를 다룰 수 있는 것은 개정안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공표와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당사자들이 모두 정보주체인 경우에 한한다.

예외로서 인정되는 제80조의 언론보도를 위한 목적(journalistic purposes)으로서의 표현은 사실상 언론기관에게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온라인상의 대화와 각종 정보의 게시는 예술적 표현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정보주체 자신이 올린 정보이외에 제3자가 처음부터 정보주체 자신에 대해 올린 정보마저 그 대상으로 포괄하는 경우 이는 표현의 자유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2.3 현행 한국 법상의 ‘잊혀질 권리’ ?

현재 우리 법은 온라인상의 ‘잊혀질 권리’를 포괄적으로 입법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나마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우선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가 업무를 목

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사적 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제공하였거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는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내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가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용자가 그와 같이 정보에 관련된 동의를 철회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일정한 경우 그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명시한다.

이 두 법률은 적어도 정보주체 자신이 제공하였거나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일정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내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잊혀질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법률상의 잊혀질 권리의 규율범위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보통 잊혀질 권리가 문제되는 경우는 정보주체가 온라인상의 게시판(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에 올린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의 삭제에 관련된 것이다. 이에 반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율대상으로 삼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만 정보주체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다. 동법은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온라인 게시판 등에 처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록 페이스북 등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규율대상으로 삼고는 있지만, 동법을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이용·제공 등을 하는 개인정보에 대

하여만 이용자에게 정정요구 내지 동의철회를 통한 삭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요컨대 자신이 회원가입 시 회원정보로서 제공한 정보나 사업자 등이 일정한 요건하에 직접 수집한 정보 등의 경우 정보주체는 현행 법 상으로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별도의 권리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한 정보통신망상에 게시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 자신이 바로 삭제나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2.4 현행 법상의 정보통신망상에 게시된 정보의 규율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상에 게시된 정보의 규율과 관련하여 우리 법은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한하여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현행 형법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신용훼손죄, 그리고 비밀침해의 죄로 규율하여 행위자로서 하여금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은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내지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한편, 민법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경우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므로,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해당 정보의 정정 내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종의 삭제요구권은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특히 공익의 목적을 위해 특정한 개인정보를 게시판 등에 공표하였거나 정보주체가 올린 정보를 복사하여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린 경우에 만약 위법성이 조각된다면 정보주체는 민법상 상대방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내지 정정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

특별법으로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이와 유사하게 이용자들에게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것을 금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러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가 일정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나 이용자는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한하여 삭제 내지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 침해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권리의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기간에 한하여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만 취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법은 미국법과 유사하게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적 구제의 차원에서 해당 정보의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3. 앞으로의 가능한 입법방향의 제시

잊혀질 권리의 입법방향과 관련하여서는 구글의 프라이버시 관련 변호사(global privacy Counsel)인 피터 플레이셔가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제시한 구분법을 주목할 만하다. 그는 2011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잊혀질 권리(right to oblivion(right to oblivion은 프랑스법에서 인정된 것으로 right to be forgotten의 유래로 자주 언급되는데, 이 권리는 유죄 판결을 받고 그에 따라 자신의 형기를 마친 후 재활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범죄 경력이나 투옥사실이 공표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와 관련하여 1) 정보주체 자신이 온라인 상에 올린 글이나 사진 등을 정보주체가 없앨 권리가 있는가; 2) 만약 정보주체가 온라인 상에 올린 글 등을 제3자가 복사 등을 통하여 그대로 제3자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린 경우 정보주체는 그 글을 없앨 권리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3) 제3자가 정보주체에 대한 글 등을 올린 경우 정보주체는 그것을 없앨 권리가 있는가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그는 위의 세 가지 분류 안에서 권리 행사의 상대방과 관련해서는 제3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포괄하여 논의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범주의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의 잊혀질 권리이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법체제하에서도 그 권리의 타당성이 쉽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직접 수집한 개인정보가 아니더라도 정보주체가 자신의 계정 상의 특정한 개

인정보를 없애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특별한 이유로 해당 정보 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한다.

한편 두 번째 범주의 경우는 사실상 잊혀질 권리의 입법화 과정에서 논의의 핵심이 될 영역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적 논의의 전제로,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현대의 기술력이 중요한 입법 자료가 될 것이다. 현대 기술로 링크되었거나 복사된 정보주체의 정보를 쉽게 찾아낼 수 없거나 제거할 수 없다면 그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사실상의 주의의무에 한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완전한 삭제가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과의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물론 통신서비스가 급속하게 발달, 확산되어 개인정보가 한번 전파된 경우 그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가 사후적 구제로 충분하지 않다는 논리는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하지만 그 게시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현행법 하에서 그와 관련된 사후적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의 실익이 얼마나 될지 연구될 필요가 있고, 오히려 개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새로운 권리의 도입이 자칫 직접적 민주주의의 움직임이 거세지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상징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사건으로는 현대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온라인상의 가상공간이 가지는 의미와 그 공간에서의 새로운 문화를 고려할 때, 기술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잊혀질 권리의 도입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주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영역으로 잊혀질 권리의 입법과 관련하여 가장 신중히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잊혀질 권리에서 이 부분은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잊혀질 권리의 입법취지를 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와의 직접적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내지 침해여부가 판단되기 전에 게시자의 동의없이 삭제를 가능케 한다면 이는 일종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특히 기존의 헌법학계가 우리 현행 헌법이 내용에 기한 사전검열을 금하는 것으로 의견이 거의 일치되어 해석하고 있는데, 잊혀질 권리가 이 부분에 대해 인정된

다면 이는 심지어 내용과도 무관하게 사적 검열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헌의 소지가 농후하다. 문언상 이 부분의 권리도 포함하는 유럽연합의 개정안이 법으로 확정될 경우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법 적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4. 결어

EU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포함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에는 틀림없다. 실제로 언론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권리침해시의 사후적 구제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잊혀질 권리는 다소 신신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입법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그 구체적 범위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있고, 20세기의 정치 민주주의를 가져왔던 표현의 자유의 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어쩌면 정보의 관리주체가 자칫 거대한 권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주체의 자신의 정보에 대한 처분권 논의는 새로운 개념의 기본권이론 내지 권리관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근대 역사에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권력에 대한 개인의 자유권 신장의 차원에서 주장된 것이었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잊혀질 권리와 충돌하는 표현의 자유는 자칫 거대 미디어나 다른 권력의 개인정보 통제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SNS가 급속히 발전, 확산되고 직접 민주주의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잊혀질 권리를 통한 타인의 표현의 자유의 억제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잊혀질 권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좀더 큰 틀에서 앞으로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 고 문 헌

[1]곽윤직·김재형 (2012). 민법총칙(제8판). 서울: 박영사, 92-93.
 [2] 개인정보보호법.

[3] 권영성(2010).헌법학원론. 서울:법문사.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허영(2004). 헌법학. 서울:신조사.
 [6] 민법 제750조 이하.
 [7] 형법 제307조 내지 309조, 제311조, 제313조, 제316조.
 [8] Franz Werro, The Right to Inform v. the Right to be Forgotten: A Transatlantic Clash, ssm.com/abstract=1401357; www.stanfordlawreview.org/online/privacy-paradox/right-to-be-forgotten?em_x=22 등.
 [9] arstechnica.com/tech-policy/2012/01/eu-proposes-a-right-to-be-forgotten;/www.theatlantic.com/magazine/archive/2012/07/the-right-to-be-forgotten/309044/
 [10] 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92602010831742001
 [11] 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document/review2012/com_2012_11_en.pdf
 [12] euobserver.com/social/31200
 [13] europa.eu/rapid/press-release_SPEECH-10-327_en.htm?locale=en
 [14] peterfleischer.blogspot.kr/2011/03/foggy-thinking-about-right-to-oblivion.html
 [15] www.bbc.co.uk/news/technology-16677370
 [16] www.stanfordlawreview.org/online/privacy-paradox/right-to-be-forgotten?em_x=22

하 정 철



- 2001년 2월 : 서울대학교 법학과(법학사)
- 2006년 5월 : 조지타운 법대 (Georgetown Law Center) (법학석사 LLM-International Legal Studies)
- 2007년 5월 : 조지타운 법대 (Georgetown Law Center)(법학석사 LLM)
- 2010년 5월 : 에모리 법대(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법학박사 Juris Doctor)
- 2011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계약법,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 E-Mail : jchah@bu.ac.kr